

돌봄정책기본법 제정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사람이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좋은 돌봄을 받고 가족 기타 친밀한 관계의 사람을 돌보며 국가의 책임 아래 지역사회 및 가족 구성원과 함께 돌봄책임을 분담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사람에게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서비스”란 아동, 노인, 장애인, 출산을 전후한 여성, 환자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관리, 신체적·정신적 활동 지원, 가사 보조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돌봄노동자”란 제1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이용하는 돌봄 제공 사업 플랫폼을 통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3. “돌봄제공기관”이란 제2호의 돌봄노동자로 하여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관을 말한다. 돌봄노동자의 업무 수락 여부나 그 비율이 업무 수행 대가 결정이나 업무 평가, 접속 허락 등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 돌봄 제공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4. “이용자”란 제1호의 돌봄 필요가 있어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5. “무급 돌봄제공자”란 제1호의 돌봄 필요가 있는 아래 각 목의 가족 기타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돌봄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가. 본인 또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부모 또는 조부모

- 나. 배우자, 결혼에 유사한 공동체의 상대방, 형제자매
- 다. 본인 또는 나목의 사람의 자녀, 입양자녀 또는 손자·손녀
- 라. 아동복지법 제15조 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받아 보호하는 아동
- 마. 그 밖에 돌봄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인

제3조(돌봄을 받을 권리) 모든 사람은 생애 주기 전반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제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돌봄 권리) 모든 사람은 일과 돌봄, 휴식을 균형있게 유지하고 제반 사회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가족 기타 친밀한 관계의 사람을 돌봄 권리를 가진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는 모든 사람이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수립하고, 모든 사람이 돌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원칙) 국가 등은 이 법에 따라 돌봄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제 때 필요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
2. 돌봄의 질을 향상시켜 좋은 돌봄을 제공할 것
3. 돌봄제공기관의 공공성을 향상시킬 것
4. 돌봄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5. 누구나 가족 기타 친밀한 관계의 사람을 돌봄 기회를 누리며 일과 돌봄, 휴식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6. 국가의 돌봄책임과 지역사회의 지원 위에서 가구 구성원이 돌봄책임을 고루 부담하도록 할 것
7. 돌봄책임을 부담하는 무급 돌봄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차별당하거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할 것
8. 돌봄정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이용자·돌봄제공기관·돌봄노동자·무급 돌

봄제공자·정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시행할 것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돌봄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돌봄서비스 제공

제8조(국가 등의 돌봄서비스 제공 의무) 국가 등은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사회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데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제9조(생애 주기 등에 따른 돌봄서비스 제공) 국가 등은 생애 주기와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등) 국가 등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돌봄서비스 제공의 보편성 확보) 국가 등은 모든 사람이 격차 없이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 돌봄서비스 제공) 국가 등은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비롯한 사회보장을 연계·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합 돌봄서비스 체계의 정착과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돌봄서비스의 무상 제공 원칙) 국가 등은 누구나 무상으로 필수적인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및 기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자의 비용 부담) 국가 등은 돌봄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위하여 재정상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돌봄서비스 제공시 차별 금지) 국가 등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가구형태 및 가구 내에서 지위, 돌봄책임, 사회적 신분,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소속 단체 또는 정당,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국적, 체류자격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돌봄제공기관

제16조(국가 등의 돌봄제공기관 설치·운영) 국가 등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수 및 분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돌봄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하고 그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돌봄제공기관 직접 운영 원칙 등) ① 국가 등은 국공립 돌봄제공기관을 새로이 설치할 경우 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등은 국공립 돌봄제공기관이 민간위탁된 상황을 개선하여 직접 운영으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공립 돌봄제공기관이 직접 운영으로 전환된 경우 국가 등은 해당 기관에 노무를 제공한 자(계약의 형식을 불문한다)에 대하여 직접 운영 전환 이후의 계속 계약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민간위탁된 국공립 돌봄제공기관의 수탁자 변경시 국가 등은 기존에 노무를 제공한 자(계약의 형식을 불문한다)에 대한 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민간 돌봄제공기관 설치·운영)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의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육성법 제2조 제1호의 협동조합, 민법 제40조의 사단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돌봄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국가 등은 민간 돌봄제공기관의 설치·운영을 인가할 경우 이 법과 돌봄노동자 기본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민간 돌봄제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① 국가 등은 민간 돌봄제공기관이 이 법과 돌봄노동자기본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가 등은 제1항의 관리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절차를 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0조(인력 및 시설 기준) 국가는 돌봄제공기관을 설치·경영하거나 지정함에 있어 이용자가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우받고 돌봄노동자가 돌봄노동자기본법과 관련 법률에 따른 노동조건에서 노동3권을 보장받으며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21조(돌봄제공기관의 차별 금지) 돌봄제공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돌봄이용자 및 돌봄노동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돌봄제공기관의 노동관계 법령 준수) 돌봄제공기관은 해당 기관에 노동을 제공하는 돌봄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고용 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3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돌봄제공기관에 대한 국공립화 또는 폐쇄조치 등) 국가 등은 민간 돌봄제공기관이 이 법과 돌봄노동자기본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더 이상 관계 법령상 기준에 따른 돌봄을 제공하기 어렵거나 돌봄노동자에게 안전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민간 돌봄제공기관에 대한 국공립화 또는 폐쇄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절차를 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4조(돌봄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돌봄제공기관은 돌봄서비스 이용자와 그 보호자(이하 “이용자 등”이라 한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하여 돌봄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돌봄노동자 보호

제25조(돌봄노동자 보호) 국가 등은 돌봄서비스가 여성이 전담하는 단순 비숙련 노동으로 간주되어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로 고착된 문제를 개선하여, 돌봄노동자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안정된 고용관계에서 노동3권을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돌봄노동에서 성평등 실현) ① 국가 등은 돌봄노동자가 여성에 치우쳐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돌봄노동자가 각 성마다 고르게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등은 돌봄노동에서 고정된 성별분업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돌봄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등 보장) 국가 등은 돌봄노동자가 적정임금 및 최소근로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돌봄제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돌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장) 국가 등은 돌봄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임금 기타 노동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지배적 영향력을 가진 자와 단체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비용의 예산 반영) 국가 등은 돌봄노동자의 적정임금 및 노동3권 보장과 안전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및 기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돌봄노동자의 인정체계 확립) 국가 등은 돌봄노동자가 전문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정체계를 수립하고, 돌봄노동자에게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이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돌봄노동자의 경력 인정) 국가 등은 돌봄노동자의 경력 및 전문능력에 따른 돌봄의 질 향상을 반영한 합리적인 급여 제도를 마련하고 돌봄제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돌봄노동자 인권보호 조치) ① 국가 등은 돌봄노동자가 돌봄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 등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로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이용자 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등의 폭언 등이 계속될 경우 국가 등은 2인 이상 공동으로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돌봄서비스 이용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이용자 비용부담분을 증액하는 등 돌봄노동자 인권침해를 중단시키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무급 돌봄제공자

제33조(무급 돌봄제공자의 균형있는 삶 보장) 국가 등은 제2조 제5호 각 목의 가족 등에 대하여 무급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자가 일과 돌봄, 휴식을 조화롭게 유지하며 균형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가족 등 돌봄 필요시 노동시간 단축 등) ① 국가 등은 누구나 가족 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시간 단축,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전환 요구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등은 누구나 노동자가 가족 등을 돌보는데 필요한 휴일과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무급 돌봄제공자의 성별 편중 완화) 국가 등은 가족 내 무급 돌봄제공자가 여성에 치우친 역사적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각 성이 평등하게 돌봄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무급 돌봄제공자에 대한 차별 제거) 국가 등은 무급 돌봄제공자가 돌봄책임을 이행한다는 이유로 직업생활에서 차별 기타 불이익의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무급 돌봄제공자에 대한 정당한 평가 보장) 국가 등은 무급 돌봄제공자의 돌봄책임이 직업활동에서 정당하게 고려되는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확산시켜야 한다.

제38조(무급 돌봄제공자에 대한 보상) 국가 등은 무급 돌봄제공자에 대하여 경제적·사회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장 돌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39조(돌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돌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돌봄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돌봄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정책 등의 동향에 관한 사항
3. 돌봄의 수요와 공급 전망에 관한 사항
4. 국공립 돌봄제공기관의 설치·운영 및 직접 운영 전환에 관한 사항
5. 민간 돌봄제공기관 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돌봄노동자의 양성과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무급 돌봄제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돌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돌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지역돌봄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역돌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 주민의 돌봄서비스 활용과 돌봄노동자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돌봄정책기본계획(이하 “지역돌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돌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돌봄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돌봄제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시·도지사가 지역돌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돌봄이용자 및 돌봄노동자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돌봄이용자의 규모, 돌봄의 내용 및 새로운 돌봄 필요 등에 관한 사항
2. 돌봄제공기관의 분포, 규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돌봄노동자의 규모, 노동조건, 처우 및 업무상 재해 등에 관한 사항
4. 무급 돌봄제공자의 분포, 돌봄 시간,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부담 정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돌봄정책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2조(돌봄정책위원회) ① 돌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돌봄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돌봄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경제적 상황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돌봄정책에 관한 사항
 3. 돌봄관련 법령 개선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돌봄과 관련하여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하고, 위원 중 한 성이 적어도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1. 돌봄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2. 돌봄제공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돌봄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무급 돌봄제공자를 대표하는 사람
 5. 돌봄문제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④ 정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⑥ 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지역돌봄위원회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제40조 제1항의 지역돌봄계획의 수립과 실행,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지역돌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3조(돌봄 관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안정화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돌봄 관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정화, 노동조건 향상 및 공공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돌봄 관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2. 돌봄 관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3. 돌봄 관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3년 이상 지속된 경우 향후 안정적 추진을 위한 사업 추진체계 개선
4. 돌봄 관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이나 예산반영에 관한 의견 제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관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안정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방안을 통보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의 설계·운영 방안을 조정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반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돌봄 관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기관·단체는 사업의 안정화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년 자신이 수행하는 돌봄 관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사업실적, 예산서, 운영지침 등 현황 통보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시한 사업개선과 예산반영 의견에 대한 결과의 보고
3. 그 밖에 돌봄 관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안정화 등을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돌봄 관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사업의 안정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 또는 권고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